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5108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매매예약취소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웅, 최정원

피 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4. E

5. F

6. 유한회사 G

소송대리인 H

7. I

8. J

9. K

10. L

11. M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소외 N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사이에 2017. 8.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사이에 2016. 9. 20.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F와 사이에 2017.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G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I와 사이에 2017.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G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J와 사이에 2017.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사이에 2017. 7.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L와 사이에 2017.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2,500,000원,

나. 피고 D은 12,500,000원,

다. 피고 E, F은 공동하여 12,500,000원,

라. 피고 유한회사 G, I는 공동하여 12,500,000원,

마. 피고 유한회사 G, J는 공동하여 12,500,000원,

바. 피고 K, C은 공동하여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외 N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시방법원 김제등기소 2017. 8. 21. 접수 제18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시방법원 김제등기소

2017. 8. 21. 접수 제18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M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9. 23. 접수 제23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 C, D, E, F, 유한회사 G, I, J,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 마, 바, 사항 기재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모두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N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7. 16. 유한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김제시 P 지상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억 8,900만 원에 도급받았고,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인 N는 공사도급계약서 하단 여백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추가공사까지 포함하여 골조공사를 모두 마쳤고, N에게 공사대금

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3) 그런데 N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가 중단이 되자, 원고는 2016. 3. 24.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N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전주지방법원 2016카단683)을 받았다가, 같은 해 5. 23. N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1억 8,900만 원에 관하여 일부는 이 사건 빌라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16. 9. 5.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N 소유의 부동산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일 그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단2299)을 받았다가, N로부터 가압류를 풀어주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빌라 Q동 R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5) 이후 N가 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4. 11. N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카단398)을 받은 다음, N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188,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3272)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진행 중인 2018. 1. 30. 원고와 N 등과 사이에, N 등이 연대하여 2018. 3. 31.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N의 처분행위

N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빌라의 동과 호수로 특정한다)을 피고들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Q동 S호는 2016. 9. 19. 피고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23.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C은 2017. 8. 31.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N와의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동 T호는 2016. 9. 19. 피고 D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22.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D은 2017. 8. 18. N와의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Q동 U호는 2016. 9. 19. 피고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23.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B은 2017. 8. 21. N와의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7. 8. 21. 접수 제 18391호, 이하 '이 사건 Q동 U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Q동 V호는 2016. 9. 20. 피고 E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21.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F은 2017. 11. 13.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N와의 2017.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W동 U호는 2016. 9. 19. 피고 유한회사 G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19.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I는 2017. 7. 2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N와의 2017. 7. 24. 매매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W동 R호는 2016. 9. 19. 피고 유한회사 G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J는 2017. 6. 30.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N와의 2017. 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W동 V호는 2016. 9. 19. 피고 K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23. 피고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C은 2017. 8. 16.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N와의 201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W동 X호는 2016. 9. 19. 피고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23.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L은 2017. 8. 21.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N와의 201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7. 8. 21. 접수 제18394호, 이하 '이 사건 W동 X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9) W동 Y호는 2016. 9. 19. 피고 K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6. 9. 23. 피고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고, 피고 M은 2017. 1. 5.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9. 23. 접수 제23988호, 이하 '이 사건 W동 Y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¹⁾.

다. N의 무자력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N의 재산상태²⁾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자력상태였

1) 이하에서는, N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밀라의 동, 호수로 특정하기로 한다.

2)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점인 2016. 9. 19.을 기준으로 한다(Q동 V호에 관한 매매예약은 2016. 9. 20.로서 단 하루만 차이

다.

적극재산	가액(원)	
	기준 시점 2016. 9. 19.	기준시점 2020. 3. 31.
이 사건 빌라	1,973,000,000	1,801,000,000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5,297,000	41,595,000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71,863,200	80,846,100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57,881,600	68,258,400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68,005,600	80,077,600
합계	2,206,047,400	2,071,777,100
소극재산	가액(사해행위 시점 및 2020. 3. 31. 모두 동일하다)	
Z조합	1,045,000,000원	
AA조합	75,000,000원	
AB	100,000,000원	
AC(주)	100,000,000원	
원고	100,000,000원	
(유)AD	300,000,000원	
AE	22,000,000원	
(유)AF	11,889,368원	
(유)G	62,256,200원	
AG	29,369,000원	
B	46,090,000원	
L	47,682,635원	
I	144,922,800원	
합계	2,244,210,003원	

라.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36,000,000원 및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Z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

나므로, 기준시점을 2016. 9. 19.로 한다).

이후 Q동 S호, T호, W동 U호, R호, V호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2. 8. 각 말소되었고, Q동 V호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 31. 각 말소되었다.

마.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위 라.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시가(원)	피담보채무액(원)	비고
1	Q동 S호	120,000,000	81,000,000	근저당권 말소
2	Q동 T호	121,000,000	〃	〃
3	Q동 U호	120,000,000	〃	근저당권 존속
4	Q동 V호	120,000,000	〃	근저당권 말소
5	W동 U호	117,000,000	〃	〃
6	W동 R호	116,000,000	〃	〃
7	W동 V호	117,000,000	〃	〃
8	W동 X호	116,000,000	〃	근저당권 존속
9	W동 Y호	196,000,000	150,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AH 이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Z조합 이사장, 김제시장, AA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N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무자가 반드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N가 일부 적극재산을 더 보유하고 있었고, N의 소극재산이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것 보다 적었다 하더라도, N가 적극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N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B, 유한회사 G, I, L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N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대금 내지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채권자들로서, N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해당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N가 이 사건 빌라 신축문제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피고들을 포함한 공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해당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등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Q동 S호, T호, V호, W동 U호, R호, V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Z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2. 8.과 2018. 1. 31. 각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3. 31. 위 각 부동산의 시가 및 피담보채무액은 위 1의 마항 기재 표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각 해당 시가에서 해당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각 해당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Q동 U호, W동 X, Y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각 해당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한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각 해당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N와 각 해당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각 해당 사해행위는 각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거나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Q동

S호에 관하여 12,500,000원, 피고 D은 Q동 T호에 관하여 12,500,000원, 피고 E, F은 공동하여 Q동 V호에 관하여 12,500,000원, 피고 유한회사 G, I는 공동하여 W동 U호에 관하여 12,500,000원, 피고 유한회사 G, J는 공동하여 W동 R호에 관하여 12,500,000원, 피고 K, C은 공동하여 W동 V호에 관하여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N에게, 피고 B은 Q동 U호에 관하여 이 사건 Q동 U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L은 W동 X호에 관하여 이 사건 W동 X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M은 W동 Y호에 관하여 이 사건 W동 X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부동산	사해행위	계약 당사자	취소범위(원)	원상회복 방법
1	Q동 S호	2016. 9. 19.자 매매예약	피고 B	12,500,000	가액배상
		2017. 8. 28.자 매매계약	피고 C		
2	Q동 T호	2016. 9. 19.자 매매예약	피고 D	12,500,000	가액배상
		2017. 8. 18.자 매매계약	〃		
3	Q동 U호	2016. 9. 19.자 매매예약	피고 B	전부	원물반환
		2017. 8. 21.자 매매계약	〃		
4	Q동 V호	2016. 9. 20.자 매매예약	피고 E	12,500,000	가액배상
		2017. 10. 17.자 매매계약	피고 F		
5	W동 U호	2016. 9. 19.자 매매예약	피고 유한회사 G	12,500,000	가액배상
		2017. 7. 24.자 매매계약	피고 I		
6	W동 R호	2016. 9. 19.자	피고 유한회사	12,500,000	가액배상

		매매예약	G		
		2017. 6. 20.자 매매계약	피고 J		
7	W동 V호	2016. 9. 19.자 매매예약	피고 K	12,500,000	가액배상
		2017. 7. 28.자 매매계약	피고 C		
8	W동 X호	2016. 9. 19.자 매매예약	피고 B	전부	원물반환 ³⁾
		2017. 8. 21.자 매매계약	피고 L		
9	W동 Y호	2016. 9. 19.자 매매예약	피고 K	전부	원물반환 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L,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 D, E, F, 유한회사 G, I, J, K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덕

3) 원물반환의 당사자는 피고 L이다.

4) 원물반환의 당사자는 피고 M이다.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2㎡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25㎡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2㎡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2㎡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85㎡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17㎡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 ,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85㎡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 ,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1.17㎡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 ,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23.29㎡

.끝.

별지2.

목록

1. 김제시 AI 대 470m²
2. 위 1.항 토지(도로명 주소 : 김제시 AJ)상 목조 목트러스지붕 단층주택 99.81m²
3. 김제시 AK 답 952m²
4. AL 답 1,006m². 끝.